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5 선고 2023가단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박충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욱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5,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2010. 1.경부터 2020. 3.경까지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22차37).
- 2) 위 법원은 2022. 4. 6.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134,245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위 지급명령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증여와 이혼 등

- 1) 피고와 C는 1981. 2. 1. 혼인신고를 마쳤다.
- 2) 피고와 C는 1997. 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2022. 2. 7. C에게 합계 45,180,346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와 C는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2호협583).
- 4)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 5)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는 이 사건 쟁점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6) 한편 이 사건 쟁점지분에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2022. 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7) 피고는 2021. 2. 23.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8) 피고와 C는 2022. 3. 24.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넘겨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5,900만 원(이 사건 쟁점지분의 현재 시세 8,500만 원 -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가 1985년경 가출한 이래 피고와 C는 계속 따로 살아왔다. 피고는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해주는 대신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합계 55,180,346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받았고 협의이혼도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설령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 사건 아파트는 법률상 부부였던 피고와 C가 혼인 중인 1997년경 각 1/2 지분씩 취득한 재산인 점, 피고와 C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전후로 C가 피고로부터 합계 55,180,346원을 받은 점, 피고와 C가 2022. 3.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실제 이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게 이루어진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받으면서 그 전후로 C에게 합계 55,180,346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시가와 위 지급액의 차액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시가가 8,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내용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객관적 가치가 8,5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C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1), 그 주장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은 없고, 실제로 그러하다면 피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좀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적어도 2010년 이전부터 전남 진도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부산에 있던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별거 경위에 대하여 C가 1985년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내용에 따른다면 이는 부양적 요소나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될 수 있는 재산분할에서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쟁점지분 이외에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의 유무나 정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정왕현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부산 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면 적 : 13 층 호 74.0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남구 대 771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71700 분의 28649

- 이 상 -

1) 피고는 분양대금이 약 8,000만 원이었는데 C가 그중 3,400만 원을 보탬다고 주장한다.